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5. 19 선고 2019가단5248053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

담당변호사 송명근

피고1. B

2. C

변론 종결2020. 4. 28.

판결 선고2020. 5. 19.

주 문

1. 피고 B는 원고에게 27,874,3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8. 17.부터 2019. 9. 15.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2020. 1. 23.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 및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택(이하 '이 사건 주택'이라고 함)에 관하여 2018. 7.

31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채권을 양도하며, 소외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18. 4. 27. D 주식회사(이하 '소외 회사'라고 함)의 보험설계사인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가 소외 회사에 부담하게 될 수수료반환채무에 대하여 이행(지급)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.

당시 원고와 피고 B는, 원고가 소외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고 B가 원고에게 그 지급보험금을 상환하되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갚기로 하였는데, 원고가 공시한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은 보험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30일째까지는 연 6%, 그 이후부터는 연 9%이다.

나. 소외 회사는 위 이행(지급)보증보험계약을 담보로 피고 B에게 보험모집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였고, 그 후 피고 B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미유지로 인해 피고 B가 소외 회사에 수수료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원고가 2019. 8. 16. 위 이행(지급)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27,874,322원을 지급하였다.

다. 한편 피고 B는 2018. 7. 피고 C과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(2009. 10. 27. 혼인신고) 같은 달 31.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자신 명의의 유일한 부동산이자 피고들 가족의 주거지였던 이 사건 주택을 피고 C에게 증여하였고, 이에 따라 2018. 8. 2.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위 재산분할 당시 피고들은 '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C을 지정하고, 피고 C은 피고 B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으며, 이 사건 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피고 C이 모두 변제하고 그와 관련해서 피고 B에게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기로' 하였다.

라. 그 후 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

진행되었고(제주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), 그 경매절차에서 소유자인 피고 C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고 남은 18,771,981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확정되었다.

[인정근거 : 갑 제1 내지 4호증, 제5호증의 1, 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]

2. 판단

가.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B는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한 27,874,322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날인 2019. 8. 17.부터 그로부터 30일째인 2019. 9. 15.까지는 약정 지연손해율인 연 6%,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인 2010. 1. 23.까지는 약정 지연손해율인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원고는 이 부분 청구원인으로, 피고 B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 C은 피고 B에게 그 받은 이익(배당금 지급청구채권)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,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,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는바(대법원 2000. 7. 28.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), 피고들의 혼인기간 및 피고 B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가 이 사건 주택을 매입 내지 유지하는데 있어서 그 남편인 피고 C의 협력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, 이혼 후에 두 자녀 모두 피고 C이 양육하기로 하였고 피고 B에게 그 양육비도 청구하지 않기로 한 점, 이 사건 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도 종국적으로 피고 C이 모두 책임지기로 한 점, 이 사건 증여로 인해 피고 C이 받은 이익이 채 2,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, 피고

B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한 것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라고 판단되고, 달리 그 재산분할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다거나 위 증여가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,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정우정

별지